

#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하여

About faithful report verification system

글. 황규철  
Hwang, Kyuchul  
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

## I. 성실신고확인제란?

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,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.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.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.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.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.

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며,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. 이러한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 하며 지금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제출시기,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,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.

## II. 성실신고확인대상자

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신고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. 따라서 이때부터 업종별로 일정 이상 수입을 거둔 사업자는 세무사, 공

인회계사, 세무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.

현재 2021년 기준 성실신고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).

업종별	2014~2017년 귀속	2018년 귀속부터
1.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)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,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	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	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
2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	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	해당년도 수입금액 7.5억 원 이상
3.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.)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* [별표 3의3]	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	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

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

자를 말한다.

\* [별표 3의3]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

구분	업종
사업 서비스업	변호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

※ 비교 :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III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기

성실신고확인서는 비치·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(세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법인, 회계법인)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다.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## IV.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

### 1. 신고 납부기한 연장

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. 이는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.

### 2. 의료비·교육비·월세세액공제

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·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(일정한 난임수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.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

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세액공제액의 20%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.

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000만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월세액을 2020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%(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3.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

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%를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.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과세되지 않는다. 해당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. 하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.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.

세액공제액 = Min(①, ②)

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× 6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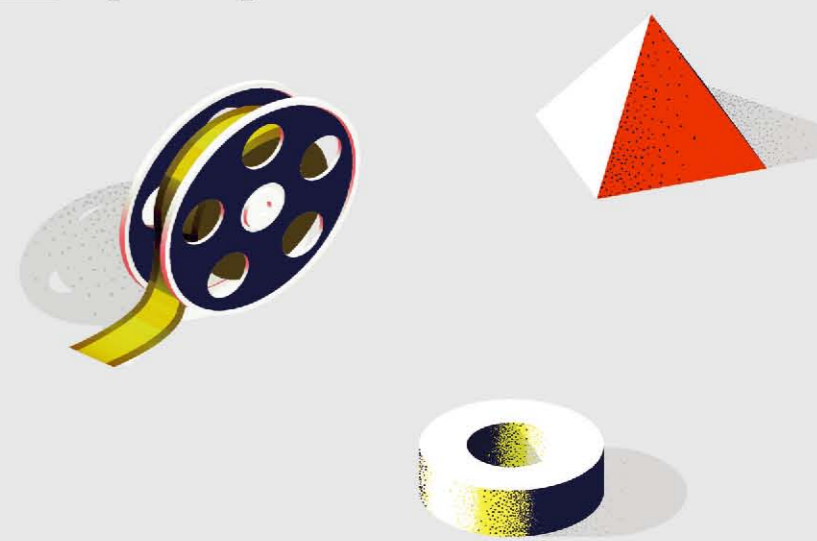
② 한도 : 120만 원

<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>

구분	농어촌특별세	최저한세 적용대상
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, 교육비, 월세	과세	대상
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	비과세	배제

# 서울 건축 랜선투어 영상 공모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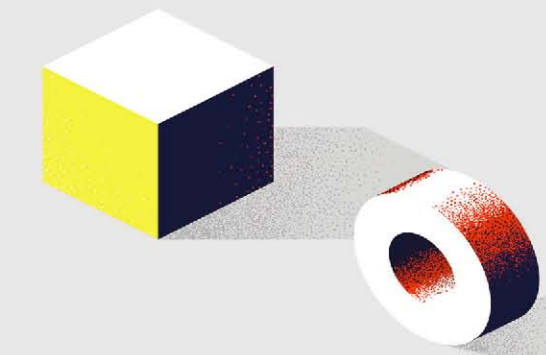
2021.5.13(목) - 7.18(일)



<b>공모주제</b>	다 같이 놀자, 서울!	<b>작품규격</b>	해상도 / FULL HD(1920 X 1080 dpi) 영상길이 / 3분 ~ 7분 이내												
<b>공모분야</b>	건축물이나 공간에 중점을 둔 서울 여행 영상	<b>시상</b>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상</th> <th>최우수상</th> <th>우수상</th> </tr> <tr> <td>당선작</td> <td>1개 팀</td> <td>1개 팀</td> <td>3개 팀</td> </tr> <tr> <td>상금</td> <td>300만 원</td> <td>150만 원</td> <td>50만 원</td> </tr> </table>	구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당선작	1개 팀	1개 팀	3개 팀	상금	300만 원	150만 원	50만 원
구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											
당선작	1개 팀	1개 팀	3개 팀												
상금	300만 원	150만 원	50만 원												
<b>참가자격</b>	건축에 관심 있는 내·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(3명 이하) 1인(혹은 단체) 최대 2작품 제출 가능	<b>문의</b>	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무국 기획홍보팀 02-6369-3336 / kirasiaff@gmail.com												
<b>공모일정</b>	공모 / 2021. 5. 13(목) - 7. 18(일) 발표 / 2021. 8. 11(수) 예정 시상 / 2021. 9. 8(수) 18:00 영화제 개막식	※ 응모방법 등 상세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(www.siaff.or.kr) 참조													



접수 QR코드  
바로가기



## V.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

### 1.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

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%의 가산세가 부과된다. 여기서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.

$$\text{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액} = \text{종합소득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사업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5\%$$

### 2. 세무조사 대상 선정

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.



**황규철**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 
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,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.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, 상속,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,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.

a93190322@daum.net